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.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64호(78. 11. 15)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64호(78. 11. 21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호의 규정에 건설부 도시계획법 제 41호(77. 3. 16)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천원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

서울특별시 시장

가. 도로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가정	소로	3		6	20.	강남구 신동 88-4	강남구 신동 88-4	
변경	소로	2		8	27.	강남구 신동 88-4	강남구 신동 88-4	가정 및 폭원 추가

※ 별첨 도면 문서와 같음(도면성략)

제 3 안

수 신: 서울특별시 시장

발 신: 천원출장소 소장

관 조: 도시계획 2과장

제 목: 등 기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64호(78. 11. 15)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64호(78. 11. 21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은 도시계획법 제 13호(79. 3. 9)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보고서 심사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의 2 규정에 79. . 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보고합니다.

첨 부: 고시문서본 및 도면 각 1부 (지적도, 현황도)

제 4 안

수 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장

제 목: 등 기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4호 (78. 11. 15)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4호 (78. 11. 21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정에 의해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얏기 보고합니다.

첨 부: 고시문서본 및 도면 각 1부 (지적도, 현황도)

제 5 안

수 신: 총무처 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장

제 목: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 게재 구분: 고 시

나. 관보 게재 건명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다. 법적 근거: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도시계획법

시행령 제73조의 2.

첨 부: 고시문서본 1부 (도면생략)

제 6 안

수 신: 서울특별시장

발신: 천호출판장장

참 조: 문화 공보관

제 목: 시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보 게재 구분: 고 시

나. 시보 게재 건명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다. 범 죄 근거: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도시계획법시행
령제7조의2.

첨 부: 고시문서본 1부 (도면생략)

제 7 안

수 신: 서울특별시

발 신: 관 출장소장

참 조: 시민과장

제 목: 관인발의 시행의뢰

1. 양소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등인에 따른 문
을 시행코저 하오니 관인 발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: 1. "4안" "5안" 공문서 각 1부

2. 고시문서본 1부 (도면생략)

제 8 안

수 신: 시민과장, 시무과장

발 신: 소장

제 목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등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4호 (78. 11. 15)로 변경 결정 및
서울특별시 고시 제 64호 (78. 11. 21)로 지적등인된 도시계획시설
(도로)에 대하여 도의 415-107호 (79. 3. 9)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
등인 보고 시정처사가 있어 별첨과 같이 지적등인 하시기 홍보하시
업무에 참고키 바라며 시민과장은 관계 도부 정려하여 제증명발급
업무에 차질이 없기 바랍.

첨 부: 고시문서본 및 도면 각 1부 (지적도, 현황도) 총

지적도 1:200

○ : 기정 계획선

▨ : 변경 계획선

--- : 폐지



